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9.30]
(제정) 2024.09.30 조례 제213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5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식소개 등 예우 실시
3.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4. 9. 30.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